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일자 : 2005. 12. 21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 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9호로 공포]됨에 따라 겨울철 설해대책업무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제설 · 제빙작업의 책임순위(안 제4조)

- 소유자 건축물내에 거주시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
- 소유자 건축물내에 미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

다. 제설 ·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안 제5조)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라. 제설 · 제빙작업의 시기(안 제6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 단,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

마. 제설 · 제빙작업의 방법(안 제7조)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함.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함
-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해야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5. 11. 10 ~ 11. 30(20일간, 별도의견 없음)
- 마. 기 타 : 표준조례안 시달(시 방재과-7575, 2005. 9. 2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완료(2005. 12.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 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 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 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 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